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6. 12 선고 2018가단1473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5. 22

판결 선고 2019. 6. 1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612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. 8. 12. 접수제193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1호증,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피고는 2010. 8. 12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

제19395호로, 원고 소유의 정읍시 C 전 612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외 7필지에 관하여, 채권최고액 2,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 정된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원고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허선아